

200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2002년 7. 1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2. 7. 1부터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판매하는 점을 감안, 방문판매 규정을 준용하고, 학습지, 피부미용 등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범위가 제한된다.

둘째, 방문·다단계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이 14일로 통일되는데, 통신판매(전자상거래)의 무조건 청약철회(7일)가 인정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원에게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이 인정된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넷째, 2002. 11. 1부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사업자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다섯째, 2002. 7. 1부터 표시·광고시 반드시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분야와 업종이 추가된다.

* 200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본지의 '부록(67면 이하)'에 게재하였다.